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80 발의연월일: 2023. 3. 24.

발 의 자:진성준・박상혁・최기상

김병욱 • 이수진(11) • 김경만

박 정・강득구・강병원

한병도 • 위성곤 • 우원식

강준현 · 김성주 · 유정주

천준호 · 노웅래 · 이학영

김영진 • 민형배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낙동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의 목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때에도 국가의 별도 지원을 받거나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은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적시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가뭄·홍수 등 물 관련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지진, 폭염·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수계관리기금을 가뭄·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9호의2 신설 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개선함"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 한다. 제35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24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	제1조(목적)		
(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			
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u>주민지원사업</u> 을	<u>주민지원사업 등</u>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			
계의 수질을 <u>개선함</u> 을 목적으	<u>개선하고 주민</u>		
로 한다.	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		
	<u>으로 공급함</u>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제35조(기금의 용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u>가. 가뭄·홍수 등 물 관련</u>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		
	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